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530919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732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5309190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임효연, 박종우, 이서윤, 정연주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9.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685,534원 및 그 중 172,412,633원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1. 2. 2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20. 7.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2020. 7.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28. 접수 제3443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다.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28. 접수 제3443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20. 7.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28. 접수 제3443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아래 각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한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변경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1차보증	2009. 3. 16.	47,500,000	2010. 3. 15. (2021. 3. 5.)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2009. 3. 16.	50,000,000
2차보증	2011. 5. 30.	54,000,000	2012. 5. 29. (2021. 5. 21.)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2011. 5. 30.	60,000,000
3차보증	2012. 5. 22.	90,000,000	2013. 5. 21. (2021. 5. 14.)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2012. 5. 22.	100,000,000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지연손해금율(2020. 11. 24.부터 연 8%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련한 구상채권보전을 위하여 1,272,901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0. 8. 4.경부터 소외 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11. 24. 소외 은행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체 대출원리금 합계 172,412,633원[40,690,750원(1차보증 원금 40,059,000원 + 이자 631,750원) + 45,757,789원(2차보증 원금 45,135,000원 + 이자 622,789원) + 85,964,094원(3차보증 원금 84,780,000원 + 이자 1,184,0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B는 2020. 7. 27. 피고 C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28. 접수 제3443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7.

28. 피고 D와 사이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28. 접수 제3443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는 2020. 7. 27. 피고 C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28. 접수 제3443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합계 173,685,534원 및 그 중 172,412,633원에 대하여 최종 대위변제일인 2020.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2.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시인 2020. 7. 27. 및 같은 달 28.경에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불과 1주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인 2020. 8.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나아가 2020. 11. 24.경 실제로 원고가 소외 은행에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남동구청, 중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1부동산 : 360,000,000원, 이 사건 2부동산 : 710,000,000원)과 2007년식 카니발(시가 33,570,000원) 등 합계 1,103,57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G은행에 대하여 124,125,000원, 기업은행에 대하여 494,400,000원, 원고에 대하여 169,974,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51,726,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44,320,000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하여 22,500,000원, H에 대하여 48,172,000원 등 합계 955,217,000원의 대출금 등 채무와 피고 D에 대하여 200,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500,000,000원이 넘는 대여금채무 등 합계 1,655,217,000원 이상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 C,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은 합계 500,000,000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D는 200,000,000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며, 당시 피고 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면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 C,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

별지